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433
----------	------

제출년월일 : 2013. 09. /2.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2013년 12월 31일)이 도래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변경(안 제3조의2)

개정조례안 : 불임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3. 8. 3. ~ 8. 22. (20일간)
- 검토결과 : 의견반영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변경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하고, “정의는”을 “뜻을”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기금”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산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에 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4호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조례 제2조제4호”를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내지 3퍼센트”를 “부터 3퍼센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월의 범위내에서”를 “6개월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준용하되”를 “따르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하여”를 “따라”로 하며, “시의회”를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3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업지원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 업 지 원 과 장 박 옥 만
	담당·팀장 직위·성명	기 업 지 원 담 당 유 정 숙
	담당자 성명·전화	박 정 애 (행정 2841)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에 따라.....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조례에서뜻은. 1.....이란..... ..에 따른..... 2.....이란.....에 따라..... 3.....이란.....에 따른..... 4.....이란..... 5.....이란..... ..에 따른..... 6.....이란.....
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4.“지식·정보산업”이라 함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
5.“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말한다.
6.“시설투자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설치 및 조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①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1.경기도 및 안산시 출연금	1.....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2.(생략)	2.(현행과 같음)
3.(생략)	3.(현행과 같음)
4.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응자상환금	4.그 밖의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②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③(생 략) 1.~4.(생 략) 5.기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④(생 략) 1.~3.(생 략) 4.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에 따라 ②..... 범위에서 ③(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그 밖의 ④(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그 밖의
제5조(융자대상업체) (생 략) 1.(생 략) 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6.(생 략) 7.조례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8.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업체)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에 따른 3.~6.(현행과 같음) 7.제2조제4호의 8.그 밖에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생 략) ②(생 략)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2(기금결산) ①(생 략) ②(생 략)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19조의2(기금결산)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따라</p>
<p>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생 략)</p>	<p>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따른다. ②(현행과 같음)</p>
<p>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위탁관리)에 따 라..... </p>